물품공급 ·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업명 : 2027년 과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
○ 발주기관 : 과천시청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이노뎁(주)
○ 협약대상 품목 : 통합관제시스템 및 통합플랫폼, 지능형관제 S/W 일체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과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"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 중 제조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**금149,209,000원(부가세포함)**을 기초로 **낙찰률을 적용**하여, **낙찰자와 협의하여 결정**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발주기관명 **과 천 시 청** (인)

제조사(공급사)명 **이노뎁(주)** (인)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업명 : 2027년 과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
○ 발주기관 : 과천시청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이노뎁(주)
○ 협약대상 품목 : 통합관제시스템 및 통합플랫폼, 지능형관제 S/W 일체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과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"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 중 제조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**금149,209,000원(부가세포함)**을 기초로 **낙찰률을 적용**하여, **낙찰자와 협의하여 결정**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발주기관명 **과 천 시 청** (인)

제조사(공급사)명 **이노뎁(주)** (인)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업명 : 2027년 과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
○ 발주기관 : 과천시청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㈜투비
○ 협약대상 품목 : 통합관제시스템 및 통합플랫폼, 지능형관제 서버 등 H/W 일체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과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"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 중 제조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**금64,921,000원(부가세포함)**을 기초로 **낙찰률을 적용하여, 낙찰자와 협의하여 결정**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발주기관명 과 천 시 청 (인)

제조사(공급사)명 ㈜투비 (인)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업명 : 2027년 과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
○ 발주기관 : 과천시청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㈜투비
○ 협약대상 품목 : 통합관제시스템 및 통합플랫폼, 지능형관제 서버 등 H/W 일체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과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"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 중 제조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**금64,921,000원(부가세포함)**을 기초로 **낙찰률을 적용하여, 낙찰자와 협의하여 결정**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발주기관명 **과 천 시 청** (인)

제조사(공급사)명 **㈜투비** (인)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업명 : 2027년 과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
○ 발주기관 : 과천시청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㈜핌
○ 협약대상 품목 : 망연계 3대, VPN 2대, UTM 1대, 웹 방화벽 1대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과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"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 중 제조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.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.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**금19,182,000원(부가세포함)**을 기초로 **낙찰률을 적용**하여, **낙찰자와 협의하여 결정**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발주기관명 **과 천 시 청** (인)

제조사(공급사)명 **㈜핌** (인)

물품공급·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업명 : 2027년 과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
○ 발주기관 : 과천시청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㈜핌
○ 협약대상 품목 : 망연계 3대, VPN 2대, UTM 1대, 웹 방화벽 1대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과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"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 중 제조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.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.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**금19,182,000원(부가세포함)**을 기초로 **낙찰률을 적용**하여, **낙찰자와 협의하여 결정**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발주기관명 **과 천 시 청** (인)

제조사(공급사)명 **㈜핌** (인)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업명 : 2027년 과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
○ 발주기관 : 과천시청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㈜넥스트테크놀로지
○ 협약대상 품목 : 백본 3대, SAN스위치 2대, L3스위치 8대, 거점스위치 53대, IP관리시스템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과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"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 중 제조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**금53,061,000원(부가세포함)**을 기초로 **낙찰률을 적용**하여, **낙찰자와 협의하여 결정**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발주기관명 **과 천 시 청** (인)

제조사(공급사)명 **㈜넥스트테크놀로지** (인)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업명 : 2027년 과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
○ 발주기관 : 과천시청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㈜넥스트테크놀로지
○ 협약대상 품목 : 백본 3대, SAN스위치 2대, L3스위치 8대, 거점스위치 53대, IP관리시스템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과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"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 중 제조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**금53,061,000원(부가세포함)**을 기초로 **낙찰률을 적용**하여, **낙찰자와 협의하여 결정**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발주기관명 과 천 시 청 (인)

제조사(공급사)명 ㈜넥스트테크놀로지 (인)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업명 : 2027년 과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
○ 발주기관 : 과천시청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스마트도시협회
○ 협약대상 품목 :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과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"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 중 제조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**금5,500,000원(부가세포함)**을 기초로 **낙찰률을 적용**하여, **낙찰자와 협의하여 결정**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발주기관명 **과 천 시 청** (인)

제조사(공급사)명 **스마트도시협회** (인)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업명 : 2027년 과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
○ 발주기관 : 과천시청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스마트도시협회
○ 협약대상 품목 :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과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"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 중 제조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**금5,500,000원(부가세포함)**을 기초로 **낙찰률을 적용**하여, **낙찰자와 협의하여 결정**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발주기관명 **과 천 시 청** (인)

제조사(공급사)명 **스마트도시협회** (인)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업명 : 2027년 과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

○ 발주기관 : 과천시청
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㈜마크애니

○ 협약대상 품목 :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과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"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 중 제조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**금4,455,000원(부가세포함)**을 기초로 **낙찰률을 적용**하여, **낙찰자와 협의하여 결정**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발주기관명 **과 천 시 청** (인)

제조사(공급사)명 **㈜마크애니** (인)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업명 : 2027년 과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

○ 발주기관 : 과천시청
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㈜마크애니

○ 협약대상 품목 :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과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"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 중 제조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**금4,455,000원(부가세포함)**을 기초로 **낙찰률을 적용**하여, **낙찰자와 협의하여 결정**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발주기관명 **과 천 시 청** (인)

제조사(공급사)명 **㈜마크애니** (인)